

#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29.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15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8년 10월 29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 가. 제안이유

연령이나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도 권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등 (안 제1조~안 제5조)
- 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안 제6조)
- 3)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안 제7조)
- 4) 위원회의 설치·기능 등 (안 제8조~안 제9조)
- 5)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유지관리 등 (안 제10조~안 제13조)

### 3. 검토의견(신준호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마포구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연령이나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도 권장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 검토의견은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보편적 설계’로서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990년대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가 제창한 개념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사례>

본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령이나 근거법령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원칙으로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는 바, 구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도시경관과에서는 도시디자인 기본조례로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을 정하고 있고,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구 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업무와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됨

특히,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공공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기본계획 수립대상이고 그 밖에 도로시설물 및 부속시설물, 문화관광시설, 가로녹지시설, 환경, 교통, 지하철시설 등은 각기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으로 심의를 실시하고 있는 등 사실상 유니버설디자인의 대부분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의무조항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법령 및 조례에 따르지 않는 특별한 경우를 본 조례에서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자치법규의 제명은 그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규율내용을 잘 나타내는 함축적이고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하며 알기 쉽게 지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임.<sup>1)</sup>

따라서, 올해는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임을 고려하여 본 조례의 제명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유한 이름의 알기 쉬운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한글 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1)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